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8. 27.(목) 10:00

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
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9호
- 나. 제 출 자 : 김경완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2. 제안이유

- 질병, 장애,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중임.
-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)
- 라.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
 -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8. 19. ~ 8. 24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질병, 장애,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다. 검토의견

- 우리나라는 「민법」 개정(개정 2011.3.7.)을 통해 기존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·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, 치료·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제도를 2013. 7. 1.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인격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취지와 「민법」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와 지원사업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9조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2.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,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,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치매관리법

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2.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,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,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9. 19.]